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4년 6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6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가. 년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
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년가일수를 사용할 수
있도록 하고, 소속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(안 제19조
제2항 및 제26조의 2)
- 나.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외공무원에게 적용되는
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,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
의 복무감독권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)
- 다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
공가를 허가하도록 함(안 제22조제4호)
- 라. 형재자매 결혼시,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
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
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3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공무원 복무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 제14262호로 개정 공포시행됨
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
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불부합 하거나
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

그 주요내용으로는

-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 단속은 재외공무원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과 아울러 복무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과
- 근무년한에 따른 연가일수의 산정기준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한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적용토록하는 것이며
-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종전까지는 연가일수를 분할사용토록 하던것을 전년가일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의 활용을 자율화하고 자치단체장에게하는 신고제도를 폐지하였고
-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 할 때는 이에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
- 경조사별 휴가 대상중 결혼, 사망, 탈상의 경우 그 대상을 형제자매로 국한하던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고 사망의 경우 백숙부모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한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복무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 부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.